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의 기준, 사전 통보로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기관, 금지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

(안 제11조의2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 항만보안 위협요인이 포함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

나. 드론 비행승인의 특례(안 제11조의5 신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통보

로만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개정)

항만시설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원본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지하고, 항만시설보안 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비·검색인력을 촬영한 결과물
2. 보안시설·장비를 촬영한 결과물
3. 항만시설 또는 부두 전체를 촬영한 결과물
4. 그 밖에 보안상의 위협요소를 촬영한 결과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를 제공 받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경우와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허가신청서를 갈음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중전의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중전의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비행승인의 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8.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
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
론을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제15조제23호의2를 제2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28조제3항단서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
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불합격처분의 유예

별표 2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더.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법 제52조	90	120	180

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7호			
커. <u>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 (재배포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u>	<u>법 제52조</u> <u>제2항제21호</u> <u>의2</u>	<u>150</u>	<u>200</u>	<u>300</u>
터. <u>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 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 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u>	<u>법 제52조</u> <u>제2항제21호</u> <u>의3</u>	<u>150</u>	<u>200</u>	<u>300</u>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총괄보안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호	90	120	180
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150	200	300
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박보안책임자로 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4호	150	200	300
마.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5호	120	160	240
바.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6호	120	160	240
사.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7호	120	160	240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8호	90	120	180
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9호	120	160	240
차.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이력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지 않거나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0호	120	160	240
카.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	법 제52조	90	120	180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1호			
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보안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비하지 않 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2호	150	200	300
파.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식별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3호	150	200	300
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로 지정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4호	150	200	300
거.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90	120	180
너.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6호	120	160	240
더.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사무소에 비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7호	90	120	180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 보안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 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8호	120	160	240
머. 법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 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1호	500	750	1,000
버.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 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인증 기관 및 시험기관이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서.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 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18호 의2	120	160	240
어.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항만시설	법 제52조 제2항제19호	120	160	240

보안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저. 법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0호	150	200	300
처. 법 제3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항만시설 내 촬영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1호	120	160	240
커.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1호 의2	150	200	300
터. 법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1호 의3	150	200	300
커.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한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거나 내부보안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2호	120	160	240
터.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안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3호	150	200	300
퍼.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4호	150	200	300
허.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5호	90	120	180
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26호	15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u> <u>간 · 복제 · 배포의 허가기준 및 절</u> <u>차)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항</u> <u>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을</u> <u>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 복제 · 배</u> <u>포(재배포를 포함한다)할 때 다음</u> <u>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u> <u>대상에서 제외한다.</u> <u>1. 경비 · 검색인력을 촬영한 결과</u> <u>물</u> <u>2. 보안시설 · 장비를 촬영한 결과</u> <u>물</u> <u>3. 항만시설 또는 부두 전체를 촬</u> <u>영한 결과물</u> <u>4. 그 밖에 보안상의 위협요소를</u> <u>촬영한 결과물</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u> <u>호의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u> <u>1.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u> <u>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하여</u> <u>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u> <u>정보를 제공 받거나 이에 준하</u> <u>는 경우</u> <u>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u>

제11조의2(무기를 반입·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략)

제11조의3(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2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재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경우와 항만시설의 공간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허가신청서를 갈음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무기를 반입·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비행승인의 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8.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

	<u>국가스공사</u> 10.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u>」 에 따른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u> 11. 「<u>한국전력공사법</u>」에 따른 <u>한국전력공사</u> 및 <u>한국전력공사</u> <u>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u> 12. 「<u>한국환경공단법</u>」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u> 13. 그 밖에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공공기관</u> <u>중 드론을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 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 공기관</u>
제15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 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위임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 -----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u><신설></u>	<u>23의2. 법 제28조제3항단서에 따 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불 합격처분의 유예</u>
<u>23의2.</u> (생략)	<u>23의3.</u> (현행 제23호의2와 같음)
24. ~ 31. (생략)	24. ~ 3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8